

<특집>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개발 및 운용 방향에 대한 소고

이희춘 /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장
보험계리인, 이학박사

1. 머리말

최근들어 사회경제의 구조가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사회로 바뀌면서 각종 결합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피해자)와 제조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WTO의 가입 등 자유무역시장의 개방으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국내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해를 입은 자는 현행 민법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현행 민법체제는 전통적이고 개별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등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조물책임법이 공포(2001. 1. 12)되었고 2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동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제조물책임법의 책임법리는 기존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법리와는 전혀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책임부담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변화는 기존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1985년도 배상책임보험위기의 주원인이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전환, 신체상해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 배상판결금액의 고액화, 과도한 소송비용 등에 있었다는 점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첫째, 동 법률을 보험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둘째, 새로운 법체제에 맞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²⁾을 개발·운용하여 생산물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의 강화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제조물책임법과 보험제도

1) 허연(1997) 참조

2) 지수현(2000)에 의하면(459p), 제조물이라는 용어와 생산물이라는 용어를 제품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였다.

가.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³⁾

제조물책임법 중 보험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민법체계하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이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생산물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소비자가 입증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동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담하게 되어, 보다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⁴⁾. 제조물책임과 다른 손해배상책임과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제조물배상책임과 다른 손해배상책임과의 비교

구 분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책임의 성격	계약책임	계약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필요여부	과실 필요	과실 불필요	과실 불필요	과실 필요	과실 불필요
손해배상범위	모든 손해	제품 자체	보증 내용	모든 손해	확대 손해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 빌딩, 교량과 같은 부동산과 미가공된 농산물, 소프트웨어와 정보는 지적재산물로 동산이 아니므로 생산물에 해당되지 않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조물책임을 지는가.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업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한 자와 제조물을 수입한 제조업자, 직접 제품을 제조·가공하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고 있는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⁵⁾. 한편,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때 결함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⁶⁾」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결함의 유형은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을 말한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제조업자는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

3) 본문 내용중 「가.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나.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제조업체의 대응」은 주로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2001)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4) 현행 민법체계하에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에 따른 제품결함의 존재」라는 2단계의 사고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지수현(2000)에 의하면(479p), UL과 같은 검사, 인증제도 결함생산물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6)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산물책임법에서는 소비자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에 의해 결함의 판정기준을 삼고 있다(지수현, 2000).

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가 결함이 있는 제품자체에만 그친 경우는 생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셋째, 생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도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소멸한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은 입증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측이 첫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둘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셋째, 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법원의 판례경향은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⁷⁾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보험제도

제조물책임법 제1조(목적)에는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도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 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생산물의 제조, 공급,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자가 그 생산물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음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한다.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등과 관련되는 보험은 크게 담보하는 위험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회수비용보험, 생산물보증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보험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은 손해(면책위험)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때 지급하는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

7) 「사실상의 추정」이라 함은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도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현행 국문약관의 생산물특별약관의 면책손해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생산물의 제조, 판매, 공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쟁위험 등 불가항력 위험, 계약상의 가중책임위험, 징벌적 손해위험, 생산물의 자체 손해위험,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대체비용, 구내위험 등이다.

(2) 생산물회수비용보험

결합있는 생산물을 수리, 교체 또는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손해가 아닌 자신의 손해이므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면책위험으로 분류되나 현재 특약형태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생산물회수비용보험은 생산물의 결합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파손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손해의 확대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 스스로 자발적 리콜 또는 정부의 강제명령(강제적 리콜)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합내용을 알리고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합제품으로 인한 위해확산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식품, 축산물 등은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리콜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을 고려해 볼 때 생산물회수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보험개발이 필요하다.

(3) 생산물보증보험

생산물보증보험은 생산물의 자체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생산물회수비용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가 아닌 자신의 손해이므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면책위험이나, 기존의 보험에서는 특약 형태로 동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였다. 즉,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시공물건인 완성작업 자체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면책위험으로 이러한 유형의 손해는 생산물자체보험(Product Itself Insurance)으로 담보된다. 생산물자체위험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Product Gurantee Legal Liability Insurance」와 「Comprehensive Dockyard Policy(조선소 종합보험)」가 인가되어 운용되고 있다.⁸⁾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개발 및 운용방향

가. 상품개발

(1) 약관

현재는 생산물배상책임위험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나 제조물 책임법의 법리가 기존의 민법의 배상책임법리와 다르므로 현재와 같은 특약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문형태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수출품에 적용되는 영문약관의 병행 사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담보위험을 통일하여 국문약관을 사용하는데

8) 지수현(2000) 참조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료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의 취지에 맞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생산물회수비용보험 보통약관, 생산물보증보험 보통약관형태로 독립시켜 개발하는 것이 관련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2) 요율

제조물책임법 취지에 맞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요율수준은 그동안 민법체제하에서 운용되었던 기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요율수준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리체제하에서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데이터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운용중인 재보험자 구득요율을 제조물책임법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의 경험실적과 책임법리의 변경으로 인한 요율인상 효과(예를 들면,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함에 따른 손해율 증가부분을 요율인상) 등을 반영하여 요율수준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검증

새로 개발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상품은 참조위험율로 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관련법상 엄격한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제조물책임법상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질위험집단의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경과 후 매년 요율수준을 검증하여 조정하는 운용방법이 필요하다. 다만, 도입초기단계임을 감안해 볼때 모든 내수품목에 대한 참조위험율의 산출은 통계자료의 불비로 대수의 법칙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많은 품목을 포함시켜 탄력적으로 요율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참조위험율의 검증), 제44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에 따라 담보위험별로 Layout을 개발하고 필요 통계자료를 집적해 나가 일정기간 경과후에 과거실적에 따른 요율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과거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제도와 다양한 공제금액제도를 두어 피보험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

다. 운용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내수품목에 대해서는 국문약관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되 대수의 법칙적용이 어려워 참조위험율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재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보험 구득요율을 사용토록 한다.

또한 단체계약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사업경비의 일정율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단체할인율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단체계약이든 개인계약(특히, 중소기업)이든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손비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입율을 제고할 수 있어 가입자와 보험회사 모두 Win & Win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손해보험회사의 대응

그동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재보험 구독요율로 운용되어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의 경험데이터와 노하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동 보험의 도입을 보다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우려의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하나의 손해보험종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손해보험회사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기초통계자료 집적이다. 동 보험이 참조위험율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집적이 필요하다.

둘째, 가입율의 제고방안이 필요하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운용되기는 하지만 법률상 의무보험은 아니다. 물론 제조업자들의 자발적인 인식의 전환과 품질관리시스템의 제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 등과 같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의무보험의 가입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가입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보상한도액(LOL)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과거의 유사품목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형태, 사고유형, 판례동향 등을 감안하여 보상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자사의 보유한도액을 위험도에 맞게 설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위험조사 및 언더라이팅 관련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동 보험은 내수품을 위주로 판매되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 시 요구되는 언더라이팅 기준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동안에도 끊임없는 위험도 조사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제거·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보험사고 가능성이 많은 공정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와 공인된 기관(예를들면, 화재예방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방재시험연구원)에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사고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법체제하에서의 보상사례, 판례 등은 동 보험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들이다.

다섯째, 다양한 공제금액의 운용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고정금액의 공제금액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스스로 선택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범 손해보험업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동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책임만 강화되었다는 인식과 원가상승 요인만 발생하였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최고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제조물책임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나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계약관계와 관계없이 쉽게 배상을 받기 위한 불법행위책임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법원에서는 그동안 제조물책임법이 없어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제조물의 결함 책임을 인정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피해자가 결함의 인

정을 받기가 쉬워졌고 인과관계의 입증 또한 용이해졌다.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미국처럼 제조물의 결함인정기준을 결함유형별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제조자 등의 생산물책임보험의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배상보장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배상책임보험처럼 피보험자에게는 위험의 분산을,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더욱이 국제무역과 소득증가로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제품의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에 있어 제조물사고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조물책임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약관은 미국 ISO 1986년 개정약관을 근거로 하여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실무에서는 배상청구기준만을 사용하여 피해자보호 등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동 보험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너무 급히 도입하여 약관체계의 전후가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후 미국약관의 개정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제간에 거래되는 제품의 보험가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문약관의 재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우리 나라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는 금년 7월 1일 이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미리 제조물책임법의 기본법리와 보험원리를 잘 알아두어 분쟁해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자는 원가의 인상과 강제적 이행수단으로서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품질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만큼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동 보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을 운용, 보험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문헌】

-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소개」, 김승곤, 방재와 보험, 1995년 가을호
- 2) 「제조물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법적연구」, 김인숙,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3)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박성호, 국민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4)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성문기, 국민대학교 대학원(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5) 「제조물책임과 보험(배상책임보험과정 연수교재)」, 신인식, 보험연수원, 2002
- 6) 「배상책임보험론」, 지수현, 보험연수원, 2000
- 7)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s Liability)」, 윤동혁, 방재와 보험, 1994년 봄호
- 8)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시행후 PL보험 변화와 시사점」, 정재욱, 김성호, 권순일, 보험개발원, 1999
-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도입에 관한 소고」, 허 연, 손해보험, 1997
- 10)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과연 포기하여야 할 것인가?」,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1987년 1월호, 통권 107호

- 1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 12) 「자동차리콜의 범위 및 정착화 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